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54호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 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4-9호, 2024. 12.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 이유

어구보증금액 납부방법을 보증금 표식 신청 후 납부하던 것을 표식을 부착한 어구 판매 후 납부토록 변경하고 및 표식 부착 작업시간 증가와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취급수수료 단가를 인상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보증금 이관액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8조)

- 사업자가 어구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정보로 갈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 산정함

나. 사업자의 어구보증금액 이관 기한 확대(안 제9조)

- 센터가 매 분기 단위로 어구등의 판매정보를 기준으로 어구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 월 말일까지 어구 보증금을 이관하도록 변경함

다. 취급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 1)

- 표식 부착 작업 시 시간 증가요인인 통발의 포장분리 및 재포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가하고 최저시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급수수료
단가를 인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구등"이란"을 "어구등"이란"으로 하고, "법"이라"을 "법"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센터"라 한다)"란"을 "센터"라 한다)"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표식"이라 한다)"란"을 "표식"이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납부 및 반환,"을 "납부, 반환 및"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 규정과의 관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를 "판매 세부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 계획 및"을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및 어구등"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다만, 어구등의 판매 수량 및 일자의 확인은"을 "다만, 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어구등의 종류·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센터는"으로, "같음"을 "같음하여 어구보증금 이관액을 산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매 분기(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단위로 제7조제2항"으로, "판매 수량 및 일자를 확인한 경

우에는"을 "종류·수량 및 일자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확인하여"로, "별지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하고, 사업자는 어구보증금 표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매 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한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이관 정보를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구보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센터"를 "사업자"로, "사업자가"를 "어구등의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는 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중 "등을 검증한"을 "등의 정보를 확인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고"를 "하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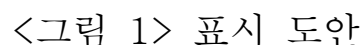
제20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1호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사각형 단위격자 1a를 기준으로 도안의 전체 크기는 세로 17a, 가로 15.5a이다.
- 화살표는 상부(북쪽)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시작하여 원형을 그린다. 화살표는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는 형태이며, 만나는 지점의 꼬리의 폭은 0a에 가깝다. 화살표의 크기는 높이가 4a이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 중앙의 그물모양(#)은 마름모 형태이며, 가로가 8a, 세로가 9.3a이고, 한 변의 길이는 8a이다.
- 화살표의 크기 및 곡률, 그물모양의 크기 및 사잇각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환급문구 작성 요령

- 환급문구는 좌측부터 표시 도안을 배치하고, 우측에 1.5a 사이를 띄운 후 어구보증금과 어구보증금액을 표시한다.
- 어구보증금 문구는 상단에서 높이 a간격만큼 띄운 하단에 위치하고, 문구의 높이는 5a로 하고, 폭은 35a로 한다.
- 어구보증금액 표시는 ‘어구·부표 보증금’표시로부터 a간격만큼 띄운 하단에 위치하고, 높이는 10a, 폭은 35a로 한다.
- 어구보증금액에 대한 문구는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어구의 종류별 어구보증금액에 따라 표시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림 2> 환급 문구

3. 어구보증금 표식의 규격

- 어구보증금 표식은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어구 종류 별로 색깔과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센터는 표식 제작 시 표식의 규격과 바코드등의 생성규칙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00원 PANTONE 123 C	색상	노랑색 계열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1,000원
 2000원 PANTONE 1585 C	색상	주황색 계열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2,000원
 3000원 PANTONE 185 C	색상	빨강색 계열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3,000원

<그림 3> 어구보증금 표식(예시)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5호서식) 중 "제출인"을 "담당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전의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세부명세 목록								
구분	출고 예정일자	구매자	어구등 종류	어구등 형태*	출고 예정량 (개)	어구보증금(원)		비고
						단가	소계	
1								
2								
3								
⋮								
합계								
위와 같이 어구보증금 표식의 구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귀하								

※ 어구등의 종류, 유형, 보증금 단가(「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등 종류	어구등 유형	어구보증금 단가
통발	스프링(장구형)	1,000원/개
	원통형	2,0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원뿔대형(대계·붉은대계류)	3,000원/개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목록								
구분	판매 일자	구매자	어구등 종류 (통발/부표)	어구등 형태*	판매량 (개)	어구보증금		비고
						단가(원)	합계(원)	
1								
2								
3								
⋮								
합계								
「수산업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어구등의 판매 세부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귀하								

※ 어구등의 종류, 유형, 보증금 단가(「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등 종류	어구등 유형	어구보증금 단가
통발	스프링(장구형)	1,000원/개
	원통형	2,0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원뿔대형(대게·붉은대게류)	3,000원/개

어구보증금 납부 고지서

○ 고지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보증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어구보증금 납부계좌		보증금 표식 발송일				
보증금액 산출 세부 명세서						
구분	어구등종류 (통발/부표)	어구등 형태*	보증금 표식 공급량(개)	어구보증금(원)		비고
				단가	소계	
1						
2						
3						
⋮						
합계	-	-		-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구보증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인)						

※ 어구등의 종류, 유형, 보증금 단가(「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등 종류	어구등 유형	어구보증금 단가
통발	스프링(장구형)	1,000원/개
	원통형	2,0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원뿔대형(대게·붉은대게류)	3,000원/개

어구보증금 납부 확인서

○ 고지번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고지금액	원	어구보증금 납부계좌	(○○은행)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		
보증금액 납부 상세명세					
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1					
2					
⋮					
합계					
보증금액 표식 공급 명세					
어구등 종류 (통발/부표)	어구등 유형	보증금 표식 공급량(개)	어구보증금(원)		비고
			단가	계	
위와 같이 어구보증금액이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인)					

※ 어구등의 종류, 유형, 보증금 단가(「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등 종류	어구등 유형	어구보증금 단가
통발	스프링(장구형)	1,000원/개
	원통형	2,0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원뿔대형(대게·붉은대게류)	3,000원/개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4호에서 이동>

어구등 회수명세서

회수관리자/회수담당자 (시·군·구/ 수탁기관)			전화번호				
주 소							
어구등 회수명세 목록							
구분	회수 일자	반환자	어구등 종류 (통발/부표)	어구등 형태*	표식부착 여부	회수량(개)	비고
1							
2							
3							
⋮							
합계							
위와 같이 어구등 회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귀하							

※ 어구등의 종류, 유형, 보증금 단가(「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등 종류	어구등 유형	어구보증금 단가
통 발	스프링(장구형)	1,000원/개
	원통형	2,0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원뿔대형(대개·붉은대개류)	3,000원/개

어구등 인수인계 명세서(수집운반 및 재활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어구등 인수·인계명세 목록								
구분	인수·인계 정보			어구등 종류 (통발/부표)	수량(개)	중량 (kg)	재질	비고
	일자	인수자	인계자					
1								
2								
3								
⋮								
합계								
위와 같이 어구등의 인수·인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귀하								

어구등 반환증(반환하는 자 보관용)

NO. _____

구분	반환일자		선명/ 허가(면호)번호			
반환하는 자	성 명	(인/서명)	전화번호			
	보증금 입금계좌		휴대전화번호			
	주 소					
회수관리자/ 회수담당자 (시·군·구/ 수탁기관)	성 명	(인/서명)	전화번호			
	소 속		직 급			
	주 소					
어구등 반환 목록 (단위 : 개, 원)						
구분	어구등 종류 (통발/부표)	어구등 형태	수량 [㉠]	보증금 단가 [㉢]	금액 A=㉠×㉢	금액 합계
1						
2						
⋮						
합 계						

-----<절취선>-----

어구등 반환증(회수관리자/회수담당자 보관용)

NO. _____

구분	반환일자		선명/ 허가(면호)번호			
반환 하는 자	성 명	(인/서명)	전화번호			
	보증금 입금계좌		휴대전화번호			
	주 소					
회수관리자/ 회수담당자 (시·군·구/수 탁기관)	성 명	(인/서명)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어구등 반환 목록 (단위 : 개, 원)						
구분	어구등 종류 (통발/부표)	어구등 형태	수량 [㉠]	보증금 단가 [㉢]	금액 A=㉠×㉢	금액 합계
1						
2						
⋮						
합 계						

※ 어구등의 종류, 유형, 보증금 단가(「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등 종류	어구등 유형	어구보증금 단가
통발	스프링(장구형)	1,000원/개
	원통형	2,0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원뿔대형(대게·붉은대게류)	3,000원/개